

『도시계획시설의 지정(광장,녹지) 해제 청원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8년 11월 19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 원평동 325-1 임상분 외 23명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한 정 우 의원

나. 청원내용

○ 지산동 594-21번지 외 36필지는 원평동과 지산동, 신평동과 지산동
도량동과 지산동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접하고 있고, 1973.
12. 31. 도시계획시설 “광장, 녹지”로 결정되었으나

○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
하고 있으며,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본 필지만으로
“광장, 녹지”지역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할 수
없는 상황이니 당초 지정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
검토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를 청원함

다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9호
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
-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청원은 구미시 지산동 594-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광장) 해제 요청 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이행으로 토지이용도의 저하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
-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구미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